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4회 임시회(2023. 10.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3-136
----------	--------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고병준 의원 외 8인
- 나. 제안일 : 2023. 10. 6.
- 다. 회부일 : 2023. 10. 10.

2. 제안이유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무의 위탁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3. 10. 6.~ 10. 14.(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배경

-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안되었음.

나. 주요 조문

-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8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및 단체 급식소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안 제5조)
-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안 제7조)
-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다. 종합 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단체급식소의 관리 지원을 통해 급식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되었음.
- 본 조례 제정에 앞서 마포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재로 96’ 소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음.

<표 1.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현황>

○ 사업대상 및 기간

구 분	어린이급식시설	사회복지급식시설	비 고
대 상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 어린이급식시설	영양사가 없는 50인 이하 사회복지·장애인급식시설	
현 황	202개소 (어린이집 177, 유치원 3, 아동복지시설 22)	15개소 (노인복지시설11, 장애인복지시설4)	
기 간	2023.1.1.~2025.12.31.	2023.7.1.~2025.12.31.	

○ 사업인력 : 11명 ⇒ 13명(2명 추가)

※ 센터장 1명, 어린이급식시설 10명, 사회복지급식시설 2명

○ 주요사업

-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지원 계획 및 실시
- 급식소 영양관리 지원 계획 및 실시, 순회방문 지도
- 시설 유형별 급식용 식단 개발·보급, 레시피 제공
- 위생·영양 교육 실시 등

○ 소요예산: 575,000천원(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마포구는 2020년 9월부터 상위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 어린이 급식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고, 금년 7월부터는 50인 이하 사회복지·장애인급식시설도 지원·관리하고 있는바, 설치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조례안에서 규정하려는 취지, 목적, 내용 및 효과 등이 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규정사항과 중복되어 조례 제정의 실익 측면에서 입법경제성이 다소 떨어짐. 다만,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기에 정책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차원에서 입법경제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급식관리지원을 통해 단체급식의 질적 향상 및 위생·영양관리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관 계 법 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